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276호
----------	-------

제출년월일 : 2016.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자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조 ~ 제6조)

- 위원회는 위원장(부군수), 부위원장(안전건설과장)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 등

나. 기술 심의·자문 대상 및 요청 (안 제7조 ~ 제8조)

- 일반 건설공사는 보상비등을 제외한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공사
- 총공사비(보상비 제외)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해당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등

다. 현장조사 등 의안 설명(안 제9조 ~ 제10조)

- 위원장은 대상 공사의 기술심의·자문 기간 중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위원에게 현장 조사 가능
- 위원장은 심의·자문서 등을 요청한 사업부서의 관계공무원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 설명 가능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안 제13조)

-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문(심의) 안전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기피·회피 등의 절차 이행

하도록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6.6.17.~7.7.) 결과, 제출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규제심사 : 행정규제 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일부반영)

개선권고	반영결과
<p>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1. ~ 3. (현행과 같음) 4.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 조교수 급 이상인 사람 또는 관련분야 박사학 위 소지자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 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 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 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 건설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 무원중 토목, 건축, 국토개발, 환경 등 분야 담당급이상 20명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 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해당 분야의 전문가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⑤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 분야는 임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p>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평창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7조 기술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토목, 건축, 국토개발, 환경 등 분야 담당급 이상 20명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해당 분야의 전문가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⑤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분야는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건설행정담당이 되고, 회의록 및 심의·자문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 개최 7일전 까지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술자문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술 심의·자문대상) ① 위원회의 기술 심의·자문 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설공사는 보상비등을 제외한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공사
2. 총공사비(보상비 제외)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해당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자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앙·지방 및 특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설공사

2.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3. 재해의 긴급 복구를 위한 건설공사

4. 국가 보안에 관련된 건설공사

5.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건설공사

제8조(기술 자문·심의 요청) ① 위원회의 기술심의·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심의·자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심의사항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서류 부수를 조정하거나 제출 자료를 추가할 수 있다.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사전 심사자료

3. 연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년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

4. 제구조 단면 및 규모 결정 산출서

5. 공법·기기 및 재료등의 산정 검토서

6.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 결정 산출서

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

8.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심의·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설계변경 자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설계변경도서

2.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제9조(현장조사 등) ① 위원장은 대상공사의 기술심의·자문 기간 중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위원에게 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이 현장조사 시에는 자문한 사업부서의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의안 설명) 위원장은 심의·자문서 등을 요청한 사업부서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해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설계 등 심의·자문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제12조(비밀 유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회의 안건에 대하여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①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제척·기피·회피에 해당되는 위원이 참여할 경우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많은 바, 자문(심의) 안건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참여할 수 없도록 별지 제5호서식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절차 이행은 물론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서약서 제출 등으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한다.

② 위원은 영 제22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않는다.

제14조(결과 처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회의 종료 후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자문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기술 심의·자문 요청서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술 심의·자문을 요청합니다.

1. 공 사 명 :
2. 공사개요 :
3. 공사위치 :
4. 소요공사비 :
5. 착공예정년월일 :
준공예정년월일 :
6. 설계상특기사항 :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직인)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사전 심사자료
3. 연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년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제출 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
4. 제구조 단면 및 규모 결정 산출서
5. 공법·기기 및 재료등의 산정 검토서
6.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 결정 산출서
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
8.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별지 제2호 서식]

설계변경 자문요청서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시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자문을 요청합니다.

1. 공 사 명 :
2. 공사개요 :
3. 공사위치 :
4. 소요 공사비 :
5. 당초 설계금액 :
 변경 설계금액 : (증·감)
6. 착공 연월일 :
7. 준공예정 연월일 :
8. 계약업체명 :
9. 변경사항 :
10. 변경사유 :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직인)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설계변경도서
2.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별지 제3호 서식]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의결서

의안번호 : -

1. 의 안 명 :

2. 방 법 :

3. 일시 및 장소 :

4. 참여인원 :

4. 의결사항

- 상기 의안을(원안의결, 조건부의결, 부결) 하는 것으로 의결함.

분야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서 명	비 고

붙임 : 회의록

[별지 제4호 서식]

설계 등 심의 또는 자문대장

공사명		의안번호		요청부서	
접수일자		회의일시		완결일자	
공사기간		총공사비		금회공사비	
자문방법	심의() 의견청취 [사전기술검토(), 기타()]				
자문자					
자문결과					
특기사항					
비고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회피신청서

□ 안전명 : 00 건설공사 기술자문위원회 설계심의

【위원이 회피(제척, 기피)에 해당하는 경우】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할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전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회피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에 (○) 표기

본인은 위 심의안전과 관련하여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심의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소 속

직 책

성명

(서명)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청 럽 서 약 서

- 공 사 명:
- 구 분:

본인은 위 ○○공사의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 받아 이해 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기술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심의할 것을 서약하며 주요 보안사항을 누설하여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2016. . .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인)

관계법령 발췌

□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①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②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계획·조사·설계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발주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 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 마.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 바.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총공사비가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
- ⑤ 기술자문위원회는 제4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기술자문설계심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⑥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17조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6항 중 "시·도 또는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 ⑦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조,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5.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담당 심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중앙심의위원회 등의 소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당 분과위원회 윤리 강령을 위반한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평창군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재정 소요 추계는 기술적으로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안전건설과장 장근용
연락처	(033) 330 - 2491